

##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근무상황 및 근무상황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3. 규칙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619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30일

발의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근무상황 및 근무상황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개인별로 관리한다.

② 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이라 한다)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 이외의 출장(이하 “관외출장”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b>출 장 신 청 서</b>		결 재	팀 장		과 장		의 장	
제 호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 일수	출장지	서명	
			시작일	종료일				
이동사항								
여 비					정 산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472호, 2021.10.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